

감리지적사례 FSS/1912-27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 쟁점분야 : 전환사채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연도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상장기업인 W사는 '1X.11.5.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제00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만기 6년, 권면총액000억원)를 발행하였으며,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1X.11.4.)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 사실 및 조기상환청구권 등 전환사채 관련 주요 발행조건을 공시하였다. 또한 회사는 '1X년 및 '1X.1분기~'1X.3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로 분류하였다.

전환사채 발행 개요

(단위 : 백만원)

| 발행일 | 만기일 | 액면금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조기상환청구권 |
|-----------|-----------|--------|-------|-------|--|
| '1X.11.5. | '2X.11.5. | XX,000 | 1.5% | 3.5% |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1X.11.5.)부터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1X년 및 '1X.1분기~'1X.3분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제00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W사 전환사채에 부여된 조기상환청구권을 간과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하였는바, 지적근거가 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주제표 표시) 문단 69에 따르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선택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회사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전환사채는 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 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유동부채로 인식했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에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금감원에서 2016년 4대 중점 감리분야 선정·발표('15.12.24.)시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테마와 관련하여 1년 이내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경우를 예시하며 주의를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전환사채 발행시 다양한 형태의 옵션이 부가되는 경우 회계처리 및 계정분류에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시 조기상환청구권 같은 조건이 부여된 경우, 전환사채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다 하여도 조기상환청구권의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전환사채가 유동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